

석유제품의 대일 수출전망

강 갑 수

〈통상산업부 석유수급과 사무관〉

1. 머리말

일본의 특정 석유제품 수입잠정 조치법이 금년 3월말로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일본에서 수입을 제한 해오던 휘발유·등유·경유에 대하여도 일본으로의 수출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이에따라 유공 및 호유에서는 금년 3월에 휘발유를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물량을 선적하여 우리나라가 특석 법 폐지후 최초로 휘발유를 본격 수출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향후 일본으로의 석유제품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일본과 인접하여 일본과의 석유제품 교역에는 운반비등에서 크게 유리하며, 일본내의 휘발유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크게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석유제품의 대일수출은 큰 가능성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석유제품 가격은 수입품의 영향등으로 급격히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석유제품수급과 가격경쟁력 및 수출채산성 등을 고려하면 대일본 수출은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 석유제품의 대일교역 현황

우리나라와 일본은 상당량의 석유제품을 수출입하여 왔다. '95년의 경우 석유제품의 대일수출은 40백만배럴에 7.9억\$이며 수입은 24백만배럴에 4.9억\$이다.

주요 수출제품은 국내 잉여제품인 고유황경유, 고유황 B-C유와 납사등이며, 수입제품은 등유, 저유황 경유 및 저유황 B-C유 등이다.

경유와 B-C유는 우리나라에서는 탈황시설이 부족한 반면 일본은 탈황시설에 다소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고유황유를 수출하

고 이를 탈황한 저유황유를 수입해 오고 있다.

등유는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가 동절기에는 공급부족으로 상당량을 수입하고 있으며,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물량은 국내 정유사에서 공급 부족시에 수급조절 용으로 긴급 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타의 수출입 품목에는 LPG와 리포메이트가 대부분이며, 리포메이트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상당량을 수입하면서 일부물량은 수출하고 있다.

이와같이 일본과의 석유제품의 수출입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정유사간에 수급조절 등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특석법 폐지 이후에도 일본에 대한 정유사간의 석유제품 수출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일본의 특석법 폐지의 내용 및 영향

일본의 특석법은 특정 석유제품인 휘발유, 등유 및 경유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1986년에 10년 한시법으로 제정 시행되었다. 동 특석법에는 특정 석유제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품질조정, 제품비축, 대체생산 등 3가지 요건을 구비도록 하여, 특정 석유제품의 수입을 석유정제 회사에게만 허용하고 대체생산

시설이 없는 유통업자등에게는 금지시켜 왔다.

금번의 특석법 폐지는 특정 석유제품의 수입요건중 대체 생산능력을 삭제하고 품질조정 및 제품비축 요건은 석유업법 등에 규정하였다.

이에따라, 수입제품에 대하여 일정수준의 품질수준을 확보하고 일

의 전체 내수물량의 0.5%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특석법 폐지에 의하여 유통업자에 의한 수입물량 자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통업자가 수입에 참여하여 가격경쟁을 시작하면 기존의 정유사 및 원매사 등에서도 수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는 수입물량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특석법은
특정 석유제품인
휘발유, 등유 및 경유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1986년에 10년
한시법으로
제정 시행되었다**

정량(수입실적의 70일분)의 석유제품을 비축하면 유통업자등도 석유제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유통업자 등에 의한 추가적인 석유제품 수입 가능 물량은 저장시설 보유규모에 의해 결정되게 되었다. 저장시설 규모에 의해 산정한 종합상사 유통업자 등의 추가 수입 가능 물량은 휘발유의 경우 최대로 년간 30만kl(190만B) 정도로 일본

4. 특석법 폐지후의 석유제품 대일 수출전망

특석법 폐지에 따라 일본으로 추가적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은 휘발유만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등유와 경유의 경우는 일본내의 가격이 국제가격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므로 수입자격이 확대되는 유통업체 등에서의 수입에 참여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일본내의 석유제품 가격이 민생용 및 산업용인 등유 및 경유 가격이 낮은 반면,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휘발유 가격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의 석유제품 수급측면에서도 등유는 일본의 성수기인 동절기에는 국내에도 공급이 부족하여 수입하여야 하는 실정이며, 일본내 소비자에게 직접판매가 가능한 저유황유는 국내의 탈황시설 부족

으로 공급이 부족하여 수출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등유 및 경유는 특석법 폐지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전망이다.

휘발유는 국내 정유사에서 국내 공급이 부족한 리포메이트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면 상당량의 수출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며, 단기적으로는 일본내의 휘발유 가격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채산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일본내의 가격도 수입품의 영향으로 국제 가격 수준으로 인하될 전망이므로 일본에 대한 수출은 국내 정유사의 가격경쟁력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휘발유에 대한 대일 수출을 국내 정유사의 계획과 국내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전망해 보고자 한다.

가. 대일본 휘발유 수출계약 체결현황

금년 3월중에 일본으로 휘발유를 수출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물량은 유공과 호유 2개사에서 전동, 일본석유등과 약 25만배럴이며, 수출가격은 FOB를 기준으로 싱가폴의 국제가격에 연동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일본의 수입선은 정유사, 유통업체, 종합상사 등으로 특석법 폐지후에 정유사에서도 수입에

참여하고 있다.

휘발유의 규격은 옥탄가(RON)가 89-91 수준으로 국내시판 규격보다 낮은 수준이며, MTBE의 경우는 0.5%~0.7%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납, 황함유량 등의 허용치와 기타의 규격은 국내시판 규격과 유사하

**일본으로의
휘발유 수출은
단기적으로는 채산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
내정유사의
가격경쟁력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나. 국내 정유사의 휘발유 수출 계획

국내 정유사의 휘발유 수출계획은 미군납 및 리포메이트를 포함하여 '96년에 약 540만배럴, '97년에 약 1,280만배럴이며, 이중 미군납 및 리포메이트를 제외한 휘발유만의 수출계획은 '96년에 200만배럴, '97년에 900만배럴 정도로 추정된다. 금년도의 경우는 이미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유공 및 호유에서만 휘발유 완제품에 대한 수출을 계획하고 있으나, 내년 이후에는 국내 정제능력의 증설에 따라 현대, 쌍용 등에서도 수출에 참여하고, 기존 업체에서도 수출물량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다만 업체별로는 완제품 수출보다는 리포메이트 상태로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내년도의 휘발유만의 수출물량은 상당히 유동적이다.

다. 리포메이트 수급

거나 다소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품질수준을 국내 정유사에서 충족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옥탄가가 국내시판 휘발유 규격보다 낮기 때문에 국내 공급이 부족한 고옥탄가의 리포메이트 수요도 크게 증가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휘발유의 주요 원료인 리포메이트는 국내공급이 부족하여 작년도의 경우 휘발유 생산물량의 약 1/3에 해당하는 20백만배럴 정도를 수입하였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납사 개질 시설의 증설로 수입물량이 다소 감소할 전망이나 15백만배럴 이상을 수입 사용할 전망이며, 내년 이후에는 금년도 수준이상의 물량

일본의 특석법 폐지와 파장

을 수입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휘발유의 생산 및 수출 물량이 증가하게 되면 리포메이트의 수입물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 수출가격 및 가격경쟁력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석유제품 수출입 가격은 싱가폴 국제가격에 연동되고 있으며, 일본에 대한 휘발유 수출가격도 싱가폴 국제가격에 연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리나라와 싱가폴은 일본에 대한 운임의 차이가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운임차이 정도의 수출가격이 유리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일 휘발유 수출가격이 싱가폴 국제가격 수준에서 운임차이 정도에서 결정될 경우에 수출채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대일 수출이 가능한지 여부와 직결된다.

마. 일본에서의 수입가능물량

일본에서 석유제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일정한 규모의 저장시설을 보유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본측 수입업자의 저장시설 보유규모 등의 수입능력에 따라서도 대일 수출물량이 제한받게 된다. 휘발유의 경우 유통업자, 종합상사등에서의 수입능력은 년간 200만배럴 수준 이하로 알려지고 있으나, 정유사의 경우에는 당연히 상당한 저장시설을 확보

하고 있으므로 수입물량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의 대일 수출물량은 종합상사 및 유통업자 보다는 정유사에 대한 수출물량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정유사가 우리나라로부터 석유제품을 수입하게 되는 경우는 생산하는



석유제품 수출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석유제품의 수출입은 일반적인 특성상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특석법 폐지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석유제품의 수출은 장기적으로는 크게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단기적으로 일본내 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은 휘발유의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수출물량은 업계의 계획과 우리나라와 일본의 수급측면 등을 고려하면 금년의 경우 150~200만배럴 수준으로 예상된다.

내년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정제 시설 신증설에 따라 잉여물량이 증가되어 수출물량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큰폭으로 증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에 대한 석유제품의 수출은 작년도에 40백만배럴인 것을 고려하면 특석법 폐지에 따라 수출이 증가되는 물량은 금년의 경우 5% 미만으로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도 10% 수준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특석법 폐지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석유제품의 수출은 장기적으로는 크게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것보다 수입하는 경우가 월등히 유리하거나 수급조절용으로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될 것이므로, 장기적인 대일 수출은 우리나라에서 저가로 장기 안정공급이 보장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 결론

특석법 폐지에 따라 일본으로의